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7.22

제출자 : 이경진의원외
외 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나. 심사기간은 1999. 7. 27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,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제 획

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

- 평창군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
- 평창군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-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·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공증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1999년 7월 27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

- 이경진의원, 감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
유강호의원, 김진석의원